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며, "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비록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들이니만큼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이어 '제조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ESG 공시의무화가 도입되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현재 ESG 공시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Bottom Up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작성자 관점과 함께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만의 작성자 관점 핵심이슈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며, 사용자 관점 핵심이슈는 TCFD*** 지침의 기후 리스크(risk)와 기회(poortunity) 관련 기업정보 요구와 활용이다"고 밝혔다.

- * 금융배출량: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 ** 그린워싱: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환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기준 제시